

임직원 윤리규범

제정 2013.3.5. <규정 제202호>

개정 2023.6.26. <규정 제433호>

개정 2025.4.8. <규정 제49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윤리경영 실천 및 윤리헌장 (별표 1) 준수를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8.>

제2조(적용범위) 이 규범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기본자세) ① 환경보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인식하고 전인류 환경보전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인격과 도덕성을 함양하여 개인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제4조(사명완수) 공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공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자기개발) 국제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 등 사회의 지탄 대상이 되는 비윤리적·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7조(이해충돌 회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며,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공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8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지 않는다.

제9조(공·사 구분) 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명확히 구분한다.

② 공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사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③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 시스템을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6.26>

제10조(직원의 상호관계) ① 직원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직원을 비방하는 등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학벌·성별·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③ 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으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한다.

⑤ 직원 상호간에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23.6.26>

제11조(건전한 생활) ①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노력한다.

②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하지 않는다.

제12조(정보 및 회계관리) ① 모든 직무관련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한다.

② 직무관련 정보를 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③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제3장 환경보호

제13조(기본자세)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제14조(환경경영 실천) 공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 및 모든 운영활동은 환경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환경경영시스템에 부합되도록 운영한다.

제15조(지속가능경영 실천) 환경과 인간을 우선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여 지역주민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폐기물처리 종합서비스기관을 구현한다.

제4장 고객존중

제16조(기본자세) ①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의 가치를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②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객의 의견과 정당한 요구에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③ 고객의 재산과 고객정보 등을 보호하고,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항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17조(고객만족 실천) 공사는 고객서비스 현장 및 이행표준에 따라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여 고객만족 향상에 기여한다.

제18조(경영공시) 공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고객이 알아야 할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5장 협력회사 등에 대한 윤리

제19조(기본자세) ① 경영활동에 있어 국내외 모든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②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한다.

③ 모든 협력회사에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협력회사와 공동발전을 지향한다.

제20조(동반성장 실천) 공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협력회사와 수도권매립지 특성에 부합하는 협력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1조(의사소통) 협력회사와의 의사소통 창구를 개설하여 고충 등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자로서의 가치를 공유한다.

제6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22조(공정한 대우) 개개인이 존엄한 인격체임을 인식하고,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성별·학력·종교·연령·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3조(능력개발) 회사의 전문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개개인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장 분위기가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4조(근무환경)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회사에 대한 임직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한다.

제7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제25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사회적 부를 창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②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③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6조(안전 및 위험예방)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제27조(국제규범 준수) ① 국제연합(UN) 글로벌컴팩트(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별표 2)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개정 2025.4.8.>

②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발전에 공헌한다.

제8장 노사화합

제28조(협력적 노사관계) ① 공사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존중하며, 정당한

활동을 자유로이 보장한다.

② 노사는 상호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추구한다.

[본조신설 2025.4.8.]

제29조(노사 간 공동 노력) ① 노사 모두가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공존과 번영을 추구한다.

② 노사는 근로조건 개선, 복리후생시설 및 제도의 확충 등 직원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다.

③ 노사는 노사화합의 조직문화 구현을 통해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한다.

[본조신설 2025.4.8.]

부칙

이 규범은 201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6.26>

이 규범은 202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4.8>

이 규범은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윤리헌장

전 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건전한 기업윤리와 깨끗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신기술 개발을 통한 폐기물 자원화를 선도함으로써 국민과 공감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자원순환 전문기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이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자율과 책임, 창의와 도전을 중시하고 예의범절과 사회질서를 준수하여 공사의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하나, 우리는 노사가 공사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협력적 관계를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환경보전을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협력회사·지역사회·국가를 환경보전의 동반자로서 인식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법규 등을 준수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공사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

국제연합(UN) 글로벌컴팩트(Global Compact)

【Human Rights(인권)】

- 원칙 1 :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원칙 2 :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Labour(노동)】

- 원칙 3 :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 원칙 4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 원칙 5 :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 원칙 6 :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Environment(환경)】

- 원칙 7 :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 원칙 8 :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 원칙 9 :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Anti-Corruption(반부패)】

- 원칙 10 :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